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를 제조장 등에 다시 반입하지 않고 폐기하여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를 추가하고, 2026년 4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이 시행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합성니코틴 담배도 포함되므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을 개정 담배사업법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6년 4월 24일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7호나목 중 “환입확인서”를 “환입확인서 또는 폐기사실
확인서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별소비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21206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조제2항제6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 ③ (생략)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20조의3제3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7.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경우: 해당 물품의 <u>환입 확인서</u>	나. ----- ----- <u>환입 확인서 또는 폐기사실 확인서류</u>
다.·라. (생략)	다.·라.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